

인권정보자료실
G1.70

세계인권선언 42주년 기념대회

佛敎에서 '法'은
'律'이 아니라 '眞理'이다.

한국의 현상행위 안에서 국제 인권법
90년 인권시대 개막 - 김승환

1990년
때 : 불기2534년 12월 9일(日) 오전 10시 30분
곳 : 영 화 사

주최 : 불교인권위원회 (720-8795, 735-2550)
후원 : 영 화 사

세계인권선언 42주년 기념법회

때 : 불기2534년 12월 9일(日) 오전 10시 30분
곳 : 영 화 사

주최 : 불교인권위원회 (720-8795, 735-2550)
후원 : 영 화 사

자료집

- 법회 순서 -

사회 : 진관 스님

- 개회
- 삼귀의
- 반야심경
- 법어(월주 스님)
- 대표인사(용태영 변호사) **북교인권회 회장대표**
- 격려사
- 강연
 1. 한국의 현상과 인권 문제(한상범 교수) **북교인권회 회장대표**
 2. 90년 인권사례 분석(김동현 변호사) **— 문명위원**
- 선언문 낭독(연기영 교수) **— 문명위원**
- 공지 사항
- 사홍서원
- 폐회

한국의 현상황과 인권의 문제

-분단과 산업화라는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본
인권보장의 문제를 생각하자-

한상범
(동국대 법대교수)

<차 례>

1. 한국에서의 인권사상 및 운동의 계보와 일제식민지 지배의 유산
 - (1) 이왕조 말 개화파와 농민전쟁의 의의와 반제투쟁
 - (2) 일제 식민지 지배의 유산
2. 분단과 산업화속의 인권상황
 - (1) 분단상황과 보안법 체제
 - (2) 61년 이후 군사통치와 개발독재하의 인권상황
3. 민주화를 통하여 인권에 이른다 고 하는 과제
 - (1) 한국의 시민계급의 자기정화의 시도와 사회체제의 개혁
 - (2) 민주화와 정치 참여의 한계성 문제
 - (3) 시민적 기본권과 노동자생존권 회복의 기본단계의 달성

1. 한국에서의 인권사상 및 운동의 계보와 일제 식민지 지배의 유산

(1) 이왕조말 개화파와 동학 농민전쟁의 의의와 반제투쟁

서방사회 자연법의 천부인권론에서 발전되어 17.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서 제도화된 인권의 관념은 우리에게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그 이전에 우리에게 그러한 인권에 관한 사상과 운동은 자생적으로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누리고 시민으로서 국가생활에서 행사하기 위해 가져야 할 권리를 함께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관념은 봉건적 전제왕권하에선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근세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에게 사회 변천에 대응하여 그러한 의식과 사회 정치적 필요성이 전혀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아무리 봉건적인 은둔의 폐쇄왕국이라고 해도 세계사적 발전의 영향으로 부터 초연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러한 역사의 발전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그러한 추세에 호응해서 자생적인 의식과 운동이 싹트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재언은 한국판 시민사상으로서 개화사상을 높이 평가하고 이 개화사상은 이왕조말 실학에 까지 소급해서 그 연원을 따진다. 실학이 유학의 일파로서 혁신적 지향이고 그 사상이 민중과의 연계가 결핍된 한계가 있으나 한국의 근대적 발전에 있어서 가지는 개혁지향적 의미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는 비단 강재언에 한하지 않는다. 실학이 유교의 한 분파로서 율곡이<성학집요>에서 말한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습니다.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습니다...”고 한 민본주의에서 나아가서 다산의 <탕론>에서는 인민주권론적 발상까지 엿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실학이 개화파에 직접·간접으로 이어져서 유길준 등의 온건개혁파와 김옥균의 급진개혁파로 나누이면서 독립협회파의 운동을 거쳐서 안도산에 이르는 부르조아 민주주의로 까지 발전하여 3.1운동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학은 갑오농민전쟁에서 그 혁명성을 발휘하여 농민의 개혁의지를 구체화시키지만 현실적으로 외세에 의한 탄압으로 좌절되지만 3.1독립운동에서 한국판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함께 만난다. 여기에 3.1운동에는 한국의 기독교가 서구적 문화수용을 통한 부르조아 민주주의사상과 그 세력으로 개화파와 동학 농민운동과와 나란히 만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일제하에서의 민권·민주의 사상과 운동은 부르조아 민족주의파와 사회주의운동과 등 두개의 큰 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개의 큰 흐름이 일제 식민지하에서 반제·반봉건 투쟁을 통해 민족 자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한다고 하는 목표에서는 일치했으나 그 이상으로 하는 국가와 사회건설이 어떠한 것인가 함에 따라 운동의 방법과 노선이 갈렸다. 일제 말엽에는 민족주의 파나 사회주의파가 모두 일제의 혹독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자체 존립조차 거의 위기에 몰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두드러지게 들어나지 않았지만, 일제가 패망하곤 다시 노선이 대립되고 미·소 양군의 한국 강점으로 좌파와 우파가 각기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하는 대립세력으로 부각되어 각기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정부를 세워 오늘에 이르게 되고 있다. 이러한 대립된 양대 체제의 존립은 1) 6.25 전쟁과 같은 민족상잔을 거쳐서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쪽도 무력에 의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했다. 2) 다음에 입헌주의와 인권문제를 볼 때에 남북의 이질체제의 대립·존속은 쌍방 사이에 흑심한 탄압체제의 존립·유지를 정당화시켜 주는 구실이 되어서 민주화와 인권보장에 일대장애가 되어오고 있다. 위 두가지 점은 아주 주요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2) 일제 식민지 지배의 유산

일본 제국주의는 그들의 「명치유신」과 1889년의 「대일본제국 헌법」에서 볼 수 있듯이 천황의 신권주의적 절대주의 지배체제였기 때문에 입헌제도와 인권보장의 제도가 아주 형식적 위견적인 것이고 오히려 봉건적 구체제적인 소작제도와 대가족제도 및 천황제 절대주의 지배질서였고 그것이 나중에는 후진자본주의 나라로서 식민지 쟁탈전에서 자기의 이권을 군사적으로 무리하게 확장하기 위하여 군국주의화 되고 파시즘화 되어갔다. 이러한 일본제국의 진군대성과 반민주성은 식민지와 그 인민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보다 흑독한 봉건적 내지 반봉건적 지배질서를 강요하고 민주제도와 동떨어진 식민지 강권지배체제를 강요당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일제는 충효와 가부장적 대가족주의, 천황지배의 신권주의적 정당화를 골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관료주의, 관존민비의 봉건성의 노골화와 식민지에서 보다 변조, 개악된 민중지배기술의 개발, 남존여비와 남계씨족 가부장 가족제도에 의한 개인의 예속과 신민적 인간형의 육성과 저임금의 사회적 기반이 되는 가계보조적 임금체계의 일반화를 통한 착취 등으로 서방의 식민지 지배보다 야만적인 탄압체제였다. 특히 신권적 천황제는 천황이 반신(半神)인 「아라히도 가미」(現人神)이고 그러한 천황제 나라는 「神國」이고 따라서 천황의 명에 대한반역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

될 수 없었다. 그것은 다시말해서 천황의 명을 집행하는 관료에 대한 복종을 절대적인 의무로 강요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서방나라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치안유지법의 탄압체제와 「전향」제도가 등장한다. 서방의 시민국가는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체이지만 개인의 내심·사상·양심까지도 지배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천황제 신권주의는 개인의 내심까지도 지배하고 모든 사회적 가치 기준의 궁극적 심판자는 천황이고 따라서 천황의 명을 수행하는 관료가 절대적 존재였다. 그래서 천황제에 반대하는 자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심정적으로 천황제의 명에 승복하는 「전향」이 있어야만 용납될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제 패망 후 미·소 양군이 남북에 각기 주둔한 후 냉전 분위기에서 이데올로기 선택의 자유가 정부권력에 의해 박탈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상·양심 문제의 최고심판자가 된 공권력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대신하는 것이 되었고 형벌 이외에 심정적 승복을 자인·선언해야하는 「전향」제도가 이제까지 계승되어 인권에 대한 탄압의 구실이 되어오고 있다. 어느 권력도 가치판단의 기준을 스스로가 독점하게 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권력의 억압자가 되며 항구적인 지위 보지를 위한 조작가 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 나쁜 점을 우리는 일제로 부터 이어받았다고 하는 점에 문제가 있다.

2. 분단과 산업화속의 인권 상황

(1) 분단 상황과 보안법 체제

우리가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전향제도의 문제점이 우리에게 「반공주의」로서 이어져서 생겨나고 있는 문제를 따지게 되는 것은

다음 두가지 점에 있다. 1) 먼저 특정 가치기준이 절대 선이고 절대 악이라고 할때 그것을 결정하는자가 기성권력자라고 하면 그것은 「천황제 신권주의」와 같은 논리가 관철된다고 하는 점이다. 시민국가는 칼 슈미트가 말하듯이 특정의 가치체계에 대해서 정부가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각이한 가치체제는 공존하며 경쟁하는 가운데서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가설·가정을 전제로 한 「중성국가」(Ein neutraler staat)이다. 이러한 중성국가적 상황을 전혀 겪어보지 못 하였다. 이왕조에선 정통유학이 군림하고 일제식민지에서 천황제 신권주의가 강요되었으며, 8.15이후에도 단선적 이데올로기와 흑백논리가 통용되는 분위기로 그대로 이어져 오게된 것이다. 그래서 서민이 이러쿵 저러쿵 의논을 펴기라도 하면 관리나 기득권 수혜층 측으로부터 “말이 많으면 빨갱이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다. 특정가치체계가 절대 선이 될 때에는 사상 양심의 자유나 다른 비판의 자유는 일체 인정될 수 없다. 그러한 분위기에선 복종의 의무만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침묵이나 방관도 용납하지 않는 「적극적 찬성과 찬양의 의무」를 강요하게 된다. 2) 다음으로 그러한 상황에서는 특정한 가치체계의 선함을 독점하는 측은 이를 수호하려는 법률을 자기 기득권이나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악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집권세력의 정권안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되어온 법의 역사였다. 따라서 시민적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출발인 반대당파의 존립의 자유와 비판가능이란 것이 용납되는 것은 집권세력의 자위에 맡겨져서 하나의 「자유」가 아니라 칼자루를 잡은 자의 은혜적 시혜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여전히 「전향」제도는 가능하며 반대당파나 개인은 절대 선에 반항하는 반역자로서 언제 보안법에 그물에 걸릴지 모르는 것이

이 체제의 특징이 되었다.

그런데 이 「반공주의」의 맹점은 빨갱이는 무조건 악으로 단정하기 때문에 철저한검열과 비밀주의로 일관하게 된다. 그래서 지적인 활동을 제약하여 한 쪽만 보는 왜곡된 시각을 가진 인간 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정권측에서 특정 이론을 검열 등으로 못보게 하고 무조건 악으로 단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권을 불신하는 반대파는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하는 쪽을 절대선으로까지 믿게 되는 신념을 심어준다. 검열로 볼 수 없는 가린 것을 일부 보면 이상과 정의가 보인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신비주의적 환상까지도 낳게 하여 「관제 용공주의자」가 대량으로 인테리 가운데서 나오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그러면 다시 이들을 탄압하게 되고 그들은 탄압의 시련속에서 「용공주의자」에서 참으로 「빨갱이」 공산주의로까지 되어간다. 우리는 이러한 공산주의의 제조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반공주의」의 공산주의자 제조과정은 더욱 혹독한 탄압체제로 악순환이 되어간다. 「반공주의」는 「자유 민주주의」를 말하는 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주요한 핵심인 인권보장은 어디에도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허위와 기만이라고 보게 되고 반대파가 반대의 신념을 굳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된다. 특히 반공이 정권 유지를 위한 「주문」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는 지식인의 참담한 배신당한 듯한 느낌은 아주 처절한것이 되고 만다.

「반공주의」가 끼친 영향은 위에 지적한 「관제 공산주의자」를 만들게 까지 권력남용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특정 부류의 정권유지의 동기에 귀결된다. 4.19혁명은 그 허위성을 노출시켜 준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반공주의가 쇠퇴하진 않는다. 안보과 반공으로 재정비되어 군사통

치에서는 더욱 강화되어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거의 제로로 까지 명목만의 것으로 만들게 까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말 자유당 정권이 60년도 정·부통령선거에서 부정을 꾸미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국가보안법과 선거법이였다. 선거법에 손을 댄 것은 이해할만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선거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이 정권유지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잘 몰랐다. 특히 당시에 국가보안법에서 문제된 개정 조항이 간첩과 같은 공안사범에 대해선 보안상 기밀을 요하므로 헌법에 정하고 있듯이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할 때는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접견을 제한하자고 하는 것이였다. 물론 이러한 헌법 위반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간첩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먼저 간첩일지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은 함부로 제한 할 수 없다. 간첩이라고 해서 함부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면 간첩이 아니면서 간첩으로 몰린 사람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 다음에 인권침해의 예외는 간첩 체포하고 하는 목적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탄압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운영을 보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가할 때에는 어떠한 죄명도 뒤집어 쓸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항은 언제나 치밀하게 정해서 남용을 미리 막아야 한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보안사범을 잡는다고 하는 구실로 고문을 하고 불법구금을 하고 온갖 위협을 가하며 인권침해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 그것은 흔히 불법연행 → 장기구금상태하의 신문과 자백의 강요 → 기소 → 재판과 유죄선고

→형집행중에 무기수나 유기수에 대한 전향강요→전향거부자의 무기한 구금...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그간의 우리의 헌정사를 돌아보면 정권유지를 위해 안보를 이유로 계엄이나 긴급조치를 하고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대대적으로 탄압한 것이 자유당때의 부산정치파동이고 박정희 정권하에서 63한일골육외교 반대시위에 대한 계엄과 그후 위수령발동 등이 있고 가장 악랄한 사례는 72년 유신선포와 함께 비상계엄조치와 그후 긴급조치 9호에 의한 시민적 정치적 자유전반에 대한 탄압이다. 박정희가 피살된 후 비상계엄과 80년 5.17계엄 등도 가장 질이 좋지 아니한 「헌법」을 위장한 탄압이고 그 합법은 안보라는 명목이었다. 보안법 체제하의 정권안보와 기득권 수호의 무법적 조치의 합법성 위장의 반복을 끝장내야만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화로의 길목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2) 61년 이후 군사통치와 개발독재하의 인권상황

61년 박정희 일당에 의한 군사 쿠데타는 이른바 「혁명공약」이란 것을 내세워서 헌법질서에 대한 파괴행위를 정당화했다. 여기서 한국의 최초의 군사 쿠데타는 남미형 군사파시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반공과 부정부패의 척결 및 무질서의 지양과 경제적 빈곤의 극복의 약속 등이 그 구호이고 명분이고 공약이었다. 군사 쿠데타에 의해 취해진 조치 중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해산과 정당사회단체의 해산은 쿠데타에 일상 따르는 것이었는데 그 밖에 주목되는 것은 노동조합의 해산과 그 간부들의 검거·투옥이다. 특히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더욱 철저했다. 이러한 조치는 군사 정권이 무엇을 노리고있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 군사정권이 추진한 이른바 「경

제개발」정책은 농촌의 고리채를 정리하는 등 농촌복지를 배려하는 듯하였으나 결국은 저곡가를 바탕으로 한 처임금으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기업의 성장이고 그것은 내수시장보다 해외시장을 겨냥한「소시얼 덤핑」에 의한 해외진출을 꾀한 성장이었다. 따라서 농민과 노동자계급에게 부담을 지우고 독과점 기업을 살찌우는 것이었다. 또 독과점기업은 차관과 외국기업의 직접적인 투자나 합작을 통해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한일협정 이후에는 일본 독점자본에 전적으로 의존·예속되어가는 구조로서 재편성되었다. 이러한 경제정책에서는 노동자가 노동운동을 통해 임금인상과 그 밖에 복지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을 철저히 탄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교원노동조합을 탄압한 이유는 교원들이 조합을 결성해 단결될 경우에 자각되어 결집된 힘이 혁신성향을 띠 수 있고 특히 노동운동으로서 사회적으로 하급에 있는 인테리인 교원이 압력단체를 통한 역할을 할 때 반정부적이 되고 군사정부가 노리는 정권 안정에 크나 큰 위협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5.16군사 쿠데타에서는 노동법의 개악, 다시 말하여 노동3권에 대한 철저한 규제로 입법이 추진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이른바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기업이나 정부기업에서는 노동운동을 몹시 제한했다. 이것은 군사통치가 반동화 될수록 보완되어 강화되었다. 72년 이른바「유신」이후 각종 입법을 단행하여 노동규제를 강화했고 80년도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친위쿠데타에 의해 만든 기구에 의해서도 그러했다. 노동정책은 사회정책 차원의 것이 아니라 치안대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노조나 노조간부들을 집시범이나 보안법 위반으로 다스리고 노동쟁의가 적법한 절차를 통하고는 거의 어렵게

만들으로써 불법쟁의로 유도하여 대응하고 노사협의회라는 노동운동 배제차원에서의 교섭이 안되면 「구사대」나 「어용노조」로 민주노조를 분쇄하는 대책을 써 왔다.

결국 군사정권은 독점자본을 대변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적 규제와 농촌정책의 반농민적 성격과 함께 공해와 환경파괴의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농촌에서 떠난 노동력은 도시로 집중되고 몰락하는 농촌에서 쫓겨난 농민은 도시빈민이 되어 주택문제, 노점상문제 및 도시빈민들의 생존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들 하층 도시빈민과 농촌에 잔류한 농민들의 불만은 노동자계급의 불만과 함께 하나의사회문제가 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도시봉급생활자들도 점차 의식이 각성되어 불만세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들이 노동조합이나 다른 압력단체를 구성하여 결사로 뭉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독점자본의 요구이고 그에 응한 정부의 각종규제가 따르게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노동3권을 비롯한 인권의 제한이고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보안법의 차원으로 대처하기 까지 하는 비상대책적 위기관리가 향상화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당국은 지금 노동운동을 비롯한 주민의 공해반대운동과 소비자운동에 이르기 까지 치안대책적 차원에서 억압적인 규제로나오고 있으나, 그러한 치안대책적 대응은 거기에 사회정책적 대책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정권당국도 인식하기에 이르고 있다. 안면도 주민의 핵폐기물반대 시민운동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지금 주민이나 노동자·농민 등의 운동과 도시빈민의 운동 등은 생존권 운동의 차원으로 결집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탄압의 수법과 자본과 정권의 대책도 치안대책을 병용한 개량주의적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초보적인 시민

의 기본권과 노동3권 등을 탄압하는데서 한발자욱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가와 사회운동가들이 대량으로 구속·투옥되고 있으며 그들이 일부는 국가보안법의 규정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농민 및 도시빈민 등 피해대중은 독점자본과 정권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초보적인 시민적 기본권을 확보하는 일로부터 발판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단체나 결사를 통해서 결집된 역량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그밖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이 보안법등 치안대책적 차원에서 억제할지라도 기존 법령의 구제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생존권 확보를 꾀해 나감으로써 사회의 각계 이해계층으로부터 공명·공감대르 형성하고 이해가 공통되면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3. 민주화를 통한 인권에 이른다고 하는 과제

(1) 한국의 시민계급의 자기 정화의 시도와 사회체제의 개혁

한국사회가 근대사회로 발전함에 있어서 자생적인 자본주의화를 이룩하지 못한 것은 다른 비서방세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 아래있던 사회가 근대적 산업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봉건적 구지배층이 제국주의 세력에 투항하고 자본가계급이 매관화된 채 민족자본가 계급으로 그 사회의 민족성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한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부패한 권력에 야합하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세력과 자본에 예속화된 경우에는 자주적 민주화의 길이 철저하게 좌절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례가 중국의 사례이다. 베링튼 무어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1963)에서 이 과제를 농민해방의 문제로 들었다. 좀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시민혁명의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왕조 양반지배층의 일부가 제국주의 세력에 투항하고 자생적 시민계급의 발전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식민지 조건하에서 민족자본의 육성은 철저하게 억제되고 그나마 가능했던 자본축적은 일제의 목인이나 그에 예속된 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매관성·관권의존성·외세 종속성이 당초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일제가 패망한 8.15이후 미군정하에서 농지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자본의 민족자본화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자본의 매관성·관권의존성·외세 종속성은 그대로 지속되었다. 특히 그것은 6.25전쟁과 그후 한일국교정상화란 일본자본의 유입 개방을 통해 새로이 재편 강화되었다.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 재벌이라고 하는 독점자본이 계속하여 관권 의존과 관권 비호하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권력에 대한 자본의 발언력과 영향력이 커져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이 재벌의 반사회성을 자정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의 체제 안정과 인권문제의 열쇠가 있다.

지금처럼 한국의 독점 자본이 비생산적인 유통과정에서 토지와 주택의 투기와 증권 등 유통과정에서의 부당이득을 챙기는데 힘을 집중하여 또 취득한 이득을 생산적 과정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에 도피시키거나 비생산적 투기에 쏟아 붓거나 사치성 낭비에 흘려버리면 지도적 지위에 머물며 체제를 안정시킬 능력을 잃고 자기의 주어진 지도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지금처럼 권력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권력의 반민주적 성향을 더욱 고취시키는데서 이해의 일치를 보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결과

를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반사회성과 반민주성의 성향을 억제하고 방향 전환에의 추진역을 할 수 있는 사회계층으로서 지식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재 한국의 지식인은 독점자본의 시종꾼이거나 사무원으로 되어가고 있고 또 대단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존재가 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가 발전될수록 그렇게 되고 현재의 한국의 사정에서는 더구나 그렇게 되어갈 수 밖에 없는 정치적 여건까지도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한 예로서 나약한 지식인이 자본이나 정권의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유혹으로서 항상 존재하고 지배권력이 필요할 때는 항상 그러한 강력한 유인장치가 가동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2) 민주화와 정치 참여의 한계성문제

인권의 문제는 정치권력과 문제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되는 것도 정치권력이다. 이에 따라 시민적 기본권의 문제는 주로 정치권력을 법률의 규제하에 둬으로써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또 인권에서 사회정책적 배려와 대책을 통해서 물질적·문화적 생활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 정치권력을 국민대중이 그러한 사회정책을 수립 집행하게끔 조정·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참여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느 면으로 보거나 인권과 정치권력과의 관계는 불가분하다. 그러므로 가장 문제는 정치권력이 국민대중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화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민주화의 문제를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민주화는 결코 쉽지 않고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치루고 달성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대개 아직도 많은 나라들에서 정치권력은 인권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 여기서 인권을 부당하게 탄압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권력남용을 항상적으로 자행하고 있고 그러한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지극히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정치권력은 인권을 함부로 탄압할 수 있는가? 하나는 대중의 민주역량이 권력을 견제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권력이 인권을 함부로 탄압하는 것은 정권을 내놓을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거나 이미 내놓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권의 평화적 교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정치권력자들은 자기가 재야의 일반시민이 될 경우를 항상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탄압하는 것을 자제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기도 하며 국민의 뜻에 따르고자하여 법률을 준수하려고 한다. 만일 무법자로 화한 정치권력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정치권력을 평화적으로 국민대중의 뜻, 다시 말해서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투표의 결과를 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투쟁을 통해서 견제되고 나아가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정부지지자와 정부반대자가 서로 정권을 유지하거나 또는 탈취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경쟁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투표의 결과에 따라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집권세력이 반대당파에 대한 관용과 공존을 하고 국민의 심판을 싫지만 따르려는 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정사를 보자. 이승만은 「백골단」과 「땃벌대」를 동원하고 「사사오입」을 하며 숫자를 조작하고 부정선거를 해서까지도 정권을 내놓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유신으로서 영구집권의 길로 나아갔고 결국 박정희가 사망함으로써 정권의 자리

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스스로 물러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권력자와 함께 문제되는 것은 그들이 반대 당파가 정권경쟁에 나서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있다. 합법적 야당으로서 얼마나 존립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사이비 자유 민주주의체제로써 버티면서 집권세력이 결코 정권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당세력은 합법적 정치투쟁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난다. 중국의 예를 들면 장개석의 국민당은 한 번도 정권을 스스로 내놓는다는 생각은 해 본 일이 없다. 그들 이론은 민주주의에 이르는 길을 1) 군정기, 2) 훈정기, 3) 민정기 3단계를 거친다고 했으나 장개석은 죽을 때까지 군정기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에 대항하는 공산당은 비합법 지하투쟁을 하는 직업혁명이 중심 조직의 군사정당으로서 무력투쟁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장악할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공산당도 스스로 정권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공산당일당집권을 고수하고 있다. 이른바 부르조아 민주주의에서는 이와 다르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반대정당이 합법투쟁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하나의 허상이고 민주화의 투쟁문제는 법률 이전의 문제로 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실제의 집권세력의 구조는 군부, 고급관료 및 재벌 등 3대 세력의 집권 판도가 되어 있음은 비밀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 3대 세력이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명분으로 삼고 있는 기존법률제도가 요구하는 사회정치적 갈등 조정장치에 따라 정권을 내놓고서도 이해관계조정에 따를 수 있는 여건을 승복할 수 있고 그들에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주장 관철하는 세력은 그들에게 이를 승복시킬 수 있는 제반 역량을 발휘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

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3) 시민적 기본권과 노동자의 생존권의 회복의 기본단계의 달성

라스키는 잘 알려진 《근대국가에 있어서 자유》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자유일반의 기본 조건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 시민적 민주제도하에서 시민의 자주적 집단·결사의 활성화는 자유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또쿠빌도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강조한 바이다. 무엇보다 사상 양심의 자유와 자기의 이익을 대변·관철할 수 있는 자주적 사회결사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기 전에 이를 관철하기 위한 권리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가 각종의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 장애를 딛고 시민적 자유를 쟁취하지 아니하면 인권은 논할 수도 없게 된다. 우리는 4.19혁명을 통하여 민주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우리가 산송장의 죽어자빠진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물론 내외의 여건이 어렵고 권력자가 동원·강구하는 강압과 지배세력에 의한 사회적 헤게모니의 짜임새가 당장에 어려운 장벽이 되고 있으나 이를 뛰어넘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특히 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 계계급이 사회적 이해관계가 날카롭고 공공연하게 대립하게 된다. 노동자나 빈민 등 하층 사회대중으로서도 자기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기본 생존의 문제로서 이전처럼 지배층의 은혜적 배려에 매달릴 수 있는 시기나 조건은 이미 지났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종 상반되는 이익을 대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계계급·계층은 각기 자기를 대변하는 조직결사를 통해 법률이 보장하는 조정관계를 거쳐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자 서로가 인정하고 공존하려는 최소한의 상호 인정과 수용을 하지 아니하면 서로가

존립할 수 없다.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지배층과 집권층의 억압적 조정을 하향식으로 일방적으로 펴오면서 사회갈등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일방적 지배층 위주의 독주는 오늘의 사회적 모순의 심각성에서 볼 때에 해결책이 아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의 정당한 욕구와 이해를 무시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반할뿐더러 그러한 모순을 그 모순으로 말미암아 피해와 손해를 당한다고 하는 쪽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인권이라고 부르는,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누리고 행사해야 할 최저한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법률의 사회적 기능에는 (1) 공공적 기능과 (2) 계급적·억압적 기능 2가지가 있다. 공공적 기능은 사회안전을 위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주고 범죄를 방지·예방하며 화재를 단속시켜주고 위생을 확보해 주는 것 같은 것이다. 계급적·억압적 기능은 정치적으로 보수집권세력에 반대하는 야당의 급진세력에 대해 탄압을 가하거나 독점기업의 편에서 권력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런데 어느사회에서나 법률이 공공적 기능만으로 일관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탄압 기능이 노출된다. 그런데 그것이 균형이 깨져서 권력의 당파성·편파성·계급성이 부정확한 탄압성으로 낙인찍히게 되면 그 권력기능은 아무리 합법성을 갖추어도 정당성을 도전받게 된다. 정치적 운동가나 노동운동가 및 양심수들이 법원의 재판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재판을 거부하거나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을 표명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기성권력의 기능이 탄압적·계급적 면에 치중하므로써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력 자체의 안정성이 동요된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말하면 법적 안정성이 동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부르조아법의 안정성은 예측가능성·계산가능성에 있다고 하면 이러한 요건을 보장하는데 치명적

허점을 보이는 것은 지배세력 자체가 자기의 위치를 올바르게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체제는 위기에 부닥치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력에 대해서 결코 환상적 희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인권이 권력의 배려로 쉽게 보장되는 일도 없다. 그렇지만 끈질기게 하나씩 인권을 보장하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면서 분투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치권력을 민주화시켜 나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 밖에 다른 묘책이 없다고 하는 현실 감각을 지녀 땅에 발을 굳건히 딛고 나가야 한다.

